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양경숙·안민석·김원이

한준호 · 김두관 · 오영환

홍영표・조오섭・노웅래

이워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체계상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등).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을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8"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34조 및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 2. 차등의결권주식의 총수
- 3. 차등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차등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그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③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	
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의2부터 <u>제15조의11까지 및 제</u>	<u>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u>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	<u>3 및 제16조의8</u>
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	
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	
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총주
	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u>「상법」 제344조 및 제369조</u>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 개 이상 10개 이하인 종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차등의결권주 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 2. 차등의결권주식의 총수
- 3. 차등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차등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 나 상속하면 그 의결권은 1주 마다 1개로 한다.
- ③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